

소송허가결정 공고

아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기2787, 2014카기10064(병합), 2014카기10065(병합)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아래 2항의 총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구성원이 되므로, 다음 사항을 잘 읽어 보시고 제외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표시

가.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7585, 2014가합100086(병합), 2014가합100093(병합) 증권관련집단소송

나. 원고(대표당사자) : 김지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1길 27, 201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환봉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8, 601호

다. 피고 : 1. 장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71 포스코더샵 103동 1115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배진혁, 이언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5, 402호(서초동, 대신빌딩)

2. 유왕돈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용산파크자이 B동 1703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홍지욱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3. 주식회사 진매트릭스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94-1 코리아바이오파크 동 7층, 8층

대표이사 김수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황혜진, 이주용, 김지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19층

2. 총원의 범위

피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진매트릭스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행위로 인하여 그 주가가 영향을 받은 기간인 2010. 12. 30.부터 2011. 1. 26.까지 및 2011. 2. 9.부터 2011. 2. 28.까지 사이에 유통시장에서 위 주식을 위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주가(별지 '시세조종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주가 및 정상주가 내역' 중 '정상주가'란 기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매수 위탁하는 등으로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다만 위 시세조종기간 중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이후 매수가격 이상으로 매도한 결과 손해가 없게 된 자들은 총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3. 청구의 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총원에게 1,50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들은 2010. 12. 30.부터 2011. 2. 28.까지 주가부양을 통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진매트릭스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고가매수, 가장·통정매매 등을 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1, 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시세조종행위 또는 같은 법 178조 제1항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총원에게 총원이 위 시세조종기간 중 유통시장에서 이 사건 주식을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취득함으로써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총원이 입은 손해는 3,590,522,310원이나, 원고(대표당사자)는 피고들과 15억 원을 배상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와 더불어 책임제한 등을 고려하여 15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5. 제외신고

가. 제외신고

1) 제외신고는 구성원이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2)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접 위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위 소송의 판결 및 소송상 화해 등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즉, 위 소송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분배절차에 따라 일정액의 배상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발생하지만, 위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피고들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나. 제외신고의 기간 및 방법

제외신고를 하고자 하는 구성원은 2019. 1. 12.까지(이 사건 소송허가결정문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5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위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제외신고기간으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허가결정이 피고들의 항고취하로 2018. 9. 7. 확정됨으로써 위 제외신고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따를 경우 구성원들의 제외신고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신고기간을 '위 소송허가결정이 항고취하로 종국된 날인 2018. 11. 12.부터 60일 이내'로 다시 정함이 타당함) 제외신고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앞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외신고서 양식은 첨부된 문서와 같으며, 인터넷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의 「양식」란의 '민사재판' 항목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 구성원의 권한

(1)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은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위 증권관련집단소송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6.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고, 성공보수는 판결, 화해, 조정성립 등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 중 1심 23%(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2심 27%, 3심 30%의 각 비율로 지급하며, 소송에 필요한 제비용은 소송대리인이 지출한 후 승소 시 분배금에서 선공제하고,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소송대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변호사보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7. 유의사항

(1) 이 고지 후 주소가 변경된 구성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한 고지는 종전 주소로 하게 됩니다.

(2) 위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중 구성원에게 개별 고지를 하지 않는 사항은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위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재판장 판사 신혁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참여관 조민정
전화 : 02-2192-1222, 팩스 : 02-2646-7153

별지

<시세조종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주가 및 정상주가 내역>

(단위 : 원)

일자	주가	정상주가
2010. 12. 30.	7,890	6,130
2011. 1. 3.	7,910	6,262
2011. 1. 4.	7,950	6,316
2011. 1. 5.	8,010	6,354
2011. 1. 6.	8,100	6,405
2011. 1. 7.	8,050	6,458
2011. 1. 10.	8,200	6,529
2011. 1. 11.	8,300	6,519
2011. 1. 12.	8,390	6,553
2011. 1. 13.	8,400	6,535
2011. 1. 14.	9,120	6,546
2011. 1. 17.	9,220	6,505
2011. 1. 18.	8,850	6,419
2011. 1. 19.	8,550	6,485
2011. 1. 20.	8,900	6,475
2011. 1. 21.	8,990	6,325
2011. 1. 24.	9,020	6,342
2011. 1. 25.	9,000	6,248
2011. 1. 26.	7,650	6,266
2011. 1. 27.	6,510	영향 없음
2011. 1. 28.	6,360	"
2011. 1. 31.	6,410	"
2011. 2. 1.	6,420	"
2011. 2. 7.	6,470	"
2011. 2. 8.	6,620	"
2011. 2. 9.	7,610	6,250
2011. 2. 10.	7,910	6,184
2011. 2. 11.	8,040	6,072
2011. 2. 14.	7,910	6,114
2011. 2. 15.	8,490	6,110
2011. 2. 16.	8,900	6,073
2011. 2. 17.	9,200	5,920
2011. 2. 18.	9,140	6,036
2011. 2. 21.	9,800	6,070
2011. 2. 22.	9,670	5,910
2011. 2. 23.	9,840	5,819
2011. 2. 24.	9,600	5,707
2011. 2. 25.	8,160	5,831
2011. 2. 28.	7,460	5,738

제외신고서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7585, 2014가합100086(병합), 2014가합
100093(병합) 증권관련집단소송

원 고 김지운

(대표당사자)

피 고

1. 장철

2. 유왕돈

3. 주식회사 진매트릭스

대표이사 김수옥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의 구성원 (-)는(은) 위 사건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제외
신고를 합니다.

20 . . .

구성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귀중

◇ 유 의 사 항 ◇

1. 구성원이 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구성원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